

[별표 11] <개정 2007.12.4>

수렵동물 확인표지(제63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 관련)

(앞쪽)

수렵동물 확인표지	
포획승인동물 :	포획승인지역 :
포획승인기간 :	. . . ~ . . .
포획장소 :	도 시/군 ()읍/면 ()리 부근
바코드 NO	포획일시 : 년 월 일 시 분 경
	포획동물 : () ☐ 암 ☐ 수
	발행일자 : 년 월 일
	수렵장설정자 (인)

(뒤 쪽)

<사 용 방 법> 1. 포획동물은 포획한 경우 즉시 수렵동물 확인표지 앞 쪽에 포획장소, 포획일시 및 포획동물을 적은 후 포획한 동물의 발목에 붙여야 합니다. 2. 포획동물의 발목에 붙일 때에는 확인표지의 접착면을 중심선부터 벗긴 후 포획동물의 발목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25.5cm×2.5cm

비고 : 확인표지의 재료는 셀로판과 아트지 300g을 혼합한 용지에 활판, 금속, 평판인쇄를 통하여 위·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고, 뒤 쪽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방향 테이프 형태로 하되, 사선형커팅 제작을 통하여 1회 부착 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.